

진주정촌 국민임대주택 기관추천(중소기업청) 우선공급 배정 안내문

I

공급개요 및 일정

- 위 치 :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1295 (정촌산업단지 19-9BL)
- 공급유형 : 국민임대
- 공급규모 : 총 794세대(지하 1층 ~ 지상19층 아파트 6개동)
- 기관추천(중소기업청) 우선공급 배정 : **20세대**

공급형별	중소기업근로자
세대수	20

일정 계획

구 분	일 자	참고사항
• 입주자모집공고(예정)일	'19. 4. 26. (금)	경남개발공사 홈페이지 참고 http://www.gndc.co.kr/
• 입주자모집지원센터 개소(예정)일	'19. 4. 17. (수)	추후 알림 (입주자 모집공고문)
• 우선공급 신청(예정)일자	'19. 5. 13. (월)~ 15. (수) 10:00 ~ 16:00	입주자모집지원센터 방문접수 (인터넷 청약접수 불가)
• 당첨자 발표(예정)일	'19. 7. 12. (금) 16:00 이후	개별통보 및 별도게시
• 계약체결(예정)일	'19. 7. 22. (월)~ 26.(금) 10:00 ~ 17:00	입주자모집지원센터 방문

※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II

기관추천 우선공급자격

- 입주자모집공고일(2019.4.26.예정) 기준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

구 분	대 상
중소기업 근로자 (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라목)	「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」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*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재직할 기간이 5년 이상(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)인 자(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)

■ 무주택세대주의 정의

- “무주택세대구성원”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(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.)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.
 - ⇒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
 - ⇒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
 - ⇒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
 - ⇒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

■ 주택소유여부 기준 (아래의 경우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) [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53조]

-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
- 비도시지역 또는 수도권을 제외한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된 주택
 - ⇒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 및 85㎡이하 단독주택
 - ⇒ 소유자의 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”에 따른 최초 등록지기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
-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
-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 숙소용 주택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,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
- 20㎡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(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)
-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
- 공부상 주택이나 폐가이거나 멸실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멸실시키거나 용도를 정리한 경우
-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

■ 일반자격 충족

- 소득기준(예정) : (전용면적 50m² 미만) 월평균소득 50% 이하
(전용면적 50m² 이상 60m² 이하) 월평균소득 70% 이하

가구원수	가구당 소득(100%)	가구당 소득(50%)	가구당 소득(70%)
3인 이하 가구	4,884,448원	2,442,220원	3,419,110원
4인 가구	5,630,275원	2,815,130원	3,941,190원
5인 가구	5,630,275원	2,815,130원	3,941,190원
6인 가구	5,952,668원	2,976,330원	4,166,860원
7인 가구	6,308,741원	3,154,370원	4,416,110원
8인 가구	6,664,814원	3,332,440원	4,665,360원

- 자산기준(예정) : (총자산가액) 세대구성원 전원보유 총자산가액 합산 22,800만원 이하
(자동차가액) 세대구성원 전원보유 개별 자동차가액 2,522만원 이하

※ 상기 일반자격 충족은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상기 입주자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,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III

임대가격(안)

■ 임대가격(안)

[단위 : 원]

단지	신청유형	기준 임대조건(원)		최대 전환시 임대조건(원)		임대보증금 추가납부 한도액(원)
		임대보증금	월임대료	임대보증금	월임대료	
진주정촌 국민임대	34m ²	입주자 모집 공고 시 안내 가능				
	38m ²					
	44m ²					
	50m ²					
	58m ²					

※ 상기 임대가격(안)은 예정금액으로 진주시 정촌 인근 전월세 시세 임대료 수준을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IV

신청 시 구비서류

-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**입주자모집공고일(2019.4.26.예정) 이후 발급분에 한함**
- 아래 필요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
- 본인 및 배우자 이외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으로 간주됨
-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
■ 기관추천 우선공급 신청 시 기본서류 (각 1통)

구비서류	비 고	부수
주민등록표등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·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와의 관계,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, 전입일/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*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(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추가 제출) *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'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'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'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'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	1통
주민등록표초본	<p><아래 해당자만 제출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·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(신청자 포함) ·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진주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진주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	1통
가족관계증명서	<p>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(세대분리, 미혼, 이혼, 사별 등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	1통
임신진단서	<p>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</p> <p><아래 해당자만 제출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, 신혼부부·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, 3자녀이상 우선공급, 배점의 부양가족수·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 	1통
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체류허가신청확인서 사본	<p><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 신청 후 등록 전인 경우 제출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 : 출입국사실증명서(혼인신고일~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입국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) · 외국인 등록 신청 후 등록 전인 경우 : 체류허가신청확인서 사본 	1통
자산 보유 사실확인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, 분양권,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*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: 임대차계약서 사본(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) (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) * 분양권 :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* 비상장주식 : 증권사 조회내역, 주식보관증 등 종목, 수량 및 가액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* 출자금/출자지분 : 출자증서 사본 ·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	1통

■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

구 분	구 비 서 류
본인 직접 신청할 때	①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만 인정) ② 본인 도장(서명으로 대체 가능)
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	① 본인(신청자) 및 배우자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만 인정) ② 본인(신청자) 도장 ③ 본인(신청자)과의 관계 입증서류(주민등록표등본 등)
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	① (인감증명방식) 본인(신청자)의 인감증명서, 위임장(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), 본인(신청자)의 인감도장 ② (본인서명방식) 본인(신청자)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본인(신청자)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(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), *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: 본인(신청자) 및 대리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만 인정)

■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

항 목	공급대상	제출서류	발급처
신청자격 보완서류	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(세대분리, 미혼, 이혼, 사별 등)	가족관계증명서	주민센터
	②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의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	장애인 복지카드 사본	주민센터
	③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	국가보훈처에 신청	국가보훈처
	④ 북한이탈주민	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	시,군,구청
	⑤ 「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」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재직할 기간이 5년 이상(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직할 경우 3년 이상)인 자 *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	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	지방 중소벤처 기업청
	⑥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* 우선공급 대상여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발급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	제출서류 :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발급처 - 기간제·파견 근로자 → 현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(지)청 - 일용근로자 →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(지)청 -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→ 노무제공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	
	⑦ 민법상 미성년(만19세미만)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※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	가족관계증명서	주민센터
	⑧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	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(주거지원시설) 입소(입주) 확인서	시,군,구청
	⑨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	한부모가족 증명서	주민센터
	⑩ 소년·소녀가정으로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추천하는 자	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추천서	시,군,구청
	⑪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,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, 5·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,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, 참전유공자	국가보훈처에 신청	국가보훈처
	⑫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수급자가 아닌 자	임대차계약서사본 또는 계약사실증명원	해당관리소
	⑬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	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확인각서	접수장소
	⑭ 아동위탁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	시장 등의 추천서	시,군,구청

항 목	공급대상		제출서류	발급처
우선공급 대상자	⑮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	(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경우)	(필수) 자녀의 기본증명서 (해당자) 입양관계증명서 /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(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)	주민센터,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
		태아만 있는 경우 한부모인 경우	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(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)	주민센터
	⑯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		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 피해자 확인증	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
	⑰ 관광근로자이거나 관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그 유족		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	주소지 관할 한국관광관리공 단
	⑱ 납북피해자		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납북 피해자 확인서	통일부 (이산가족과)
⑲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		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 입 소확인서	시.군.구청	

V 유의사항

- 기관추천 우선공급대상자가 **신청일[2019.5.13.(월)예정]에 입주자모집지원센터 (진주시)에서 방문접수하지 않을 경우 대상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.**
(미신청시 당첨자 선정(동·호배정) 및 계약 불가)
- 신청한 주택형의 동·호수 배정은 관련법령에 의거 우선공급·일반공급 구분없이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.
(미신청, 미계약 동·호 발생시에도 변경 불가)
- 기관추천 우선공급대상자는 타 우선공급(다자녀, 신혼부부, 노부모부양)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,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 불가합니다.
-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**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- **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청기일에 입주자모집 상담소에서 분양신청을 접수해야 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**
(미신청시 당첨자 선정(동·호배정) 및 계약 불가)
- 기타 문의사항은 **경남개발공사 마케팅사업부 (055-269-0439)**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V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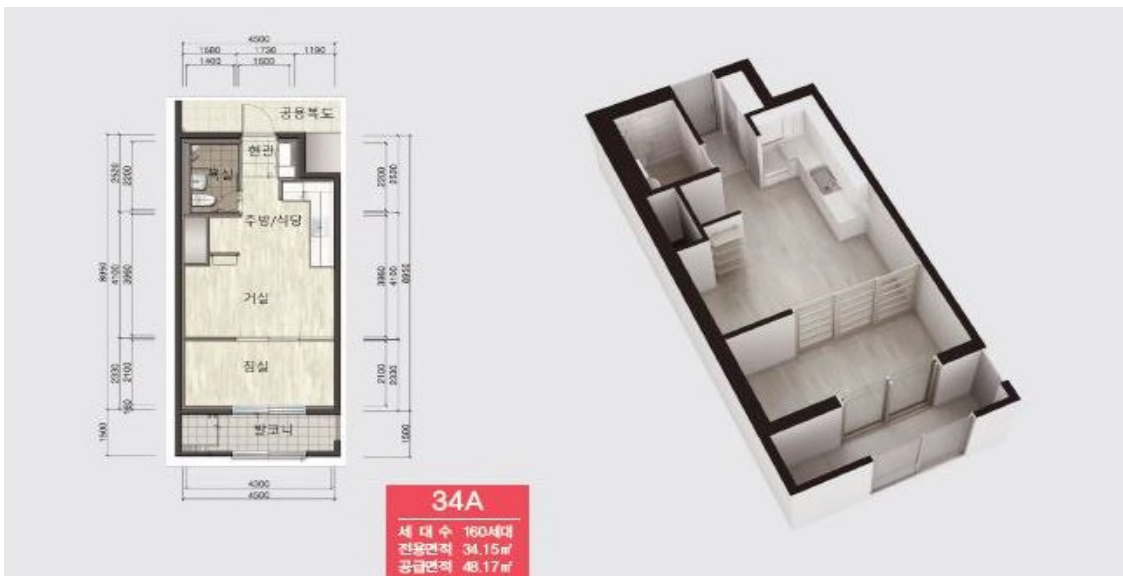
단지 조감도(안)



VII

단위세대 평면도(안)

■ 34A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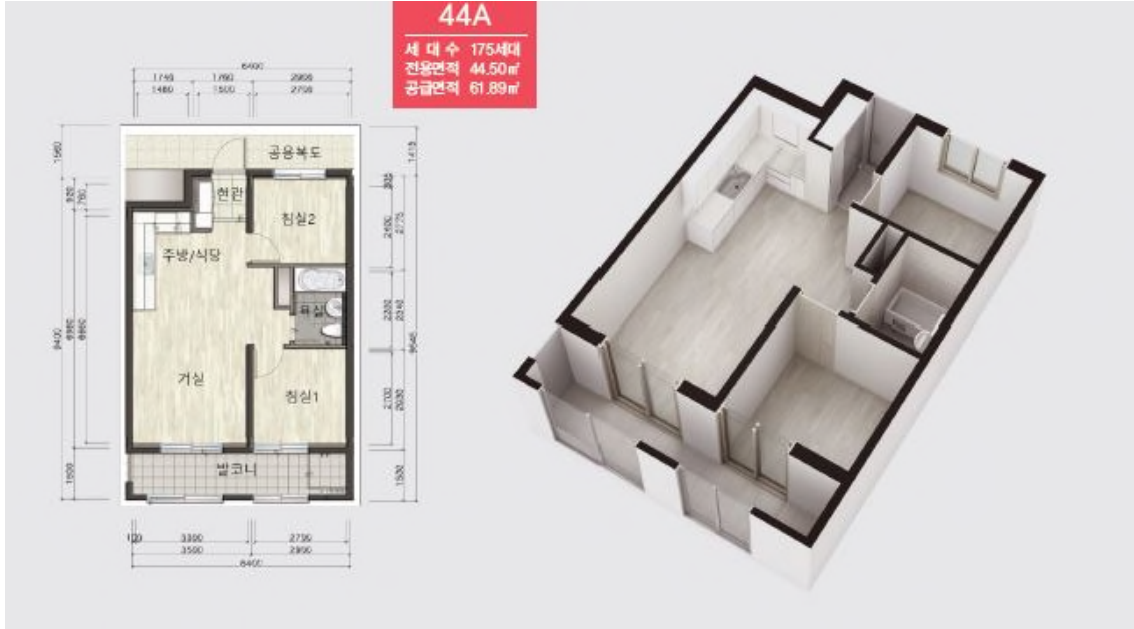
■ 34B - 주거약자용 공급 (장애인 등)



■ 38A



■ 44A



■ 44B



■ 50A



■ 50B



■ 59A



※ 평면도는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안내 자료이며, 설계변경 및 본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.